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청 소 년 보 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,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·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「청소년 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21537호, '26.4.7. 공포, '26.10.8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
- 나.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
- 다. 청소년 출입·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('26. 4.20~'26. 5.13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출입·고용금지업소(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)의 업주 및 종사자”를 “출입·고용금지업소의 업주”로 한다.

별표 11 제6호 위반행위란 제6호 중 “법 제2조제5호나목1)·2)·4)·5)·6)·7)”을 “법 제2조제5호나목·2)·4)·5)·6)·7)·8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청소년 출입 · 고용금지업 소의 범위) ① · ② (생 략)	제5조(청소년 출입 · 고용금지업 소의 범위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③ 법 제2조제5호가목5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. 다만,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 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청소년 출입 · 고용 제한 표시)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<u>출입 · 고용금지업소(청 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를 제외한다)의 업주 및 종사자</u> 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 · 이용 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	제28조(청소년 출입 · 고용 제한 표시) ----- ---- <u>출입 · 고용금지업소의 업 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92